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 일시 2013년 1월 16일(수) 15시
- 장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목적 강당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 일시 2013년 1월 16일(수) 15시
- 장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목적 강당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CONTENTS

- 포럼일정 05
- 기념사
김문수(경기도지사) 06
- 환영사
고훈(안산제일복지재단 대표이사) 07
- 축사
윤화섭(경기도의회 의장) 08
- 격려사
김철민(안산시장) 09
- 기조강연
다문화 사회와 인권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장) 11
- 기조발제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前 다문화학회 회장) 17
- 패널 토론
 - 박경태(성공회대 교수) 36
 - 이라(경기도의회 의원) 38
 -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40
 -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42
 - 마뎀 알엄(프리포트 대표) 46
 - 소라미(공감 변호사) 48
- 센터 소개 49
- 함께 하는 사람들 6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포럼 일정

- 15:00 ● 식전공연 안녕하세요, 인권씨
- 15:15 ● 인사말 및 센터소개 : 오경석(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15:25 ● 기조강연 다문화 사회와 인권 :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장)

제 1부 기조발제 :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의 비전과 과제

- 15:40 ● 사회 : 이재준(경기도의회 의원)
- 기조발제 :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前 다문화학회 회장)

제 2부 패널 토론 : 이주민 인권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역할

- 15:55 ● 패널
 - 박경태(성공회대 교수)
 - 이라(경기도의회 의원)
 -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 마뽀 알엄(프리포트 대표)
 - 소라미(공감 변호사)
- 16:55 ● 인권나무 심기
- 17:00 ● 폐회



기념사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내 42만 5천 외국인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입니다. 전국 140만 외국인의 30%에 이르는 42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편안하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존엄한 인권 주체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국 최초로 개소하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 외국인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이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확고한 인권 의식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정책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민과 외국인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 외국인 인권 선도 지자체로 발전해가는 것에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가치는 21세기 지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 전담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으로 외국인 인권 분야에서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만들어온 바 있습니다. 2009년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인권증진 조례와 2011년 경기도의 외국인인권지원 조례, 도내 6곳의 외국인주민복지 센터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 분야에서 경기도가 만들어낸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외국인 인권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저희 안산제일복지재단은 20여년전부터 장애인, 노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사할린 동포, 결혼이민자 등 내외 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저희 재단이 이번 인권센터 운영을 계기로 외국인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해나가는 일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권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나그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끝없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인권 지역으로 성장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안산제일복지재단 대표이사 **고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윤화섭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다문화 가족 여러분, 내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인권정책 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1,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과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화롭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쳐 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인권문제가 더욱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올바른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다문화 사회의 인권시책 발굴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바탕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촌 다문화 시대에 경기도 다문화 인권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어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진정한 통합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을 교류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 인권정책 조례 제·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장 **윤화섭**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개발 전담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안산시에 입지하고 오늘 개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들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안산 지역은 “전국 최고의 다문화 중심도시”로서 외국인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안산시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하여 내·외국인의 공존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2009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와 인권을 대표하는 안산의 다문화 특구 지역 내에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이 외국인 인권 시책 및 외국인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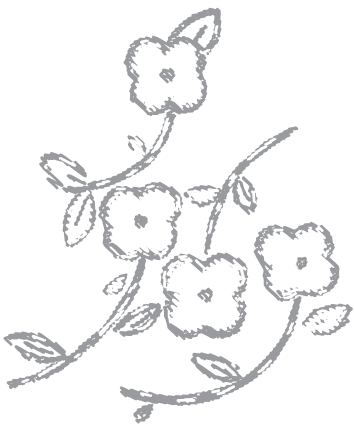
향후 저희 안산시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 및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인권 인프라 개발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가 다문화 인권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센터 개소를 계기로 소중한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늘 어려움에 부딪치는 외국인주민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 ‘등대’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안산시장 김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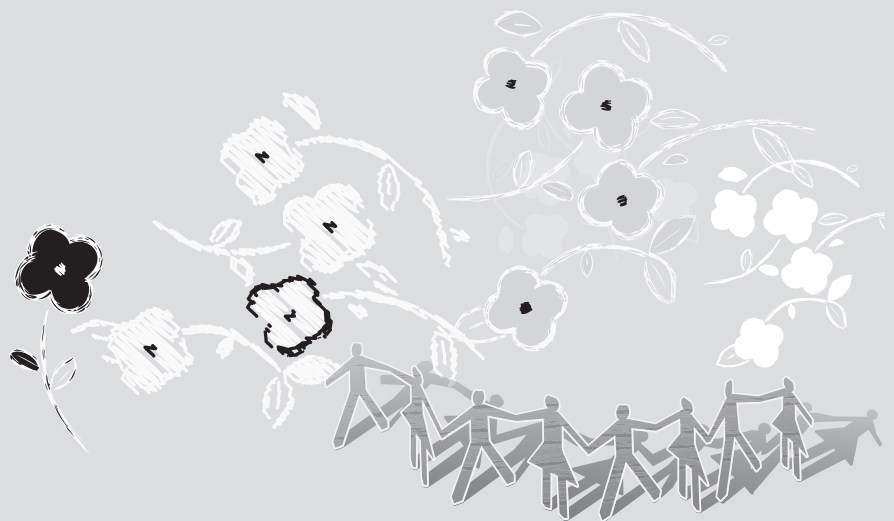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기조
강연

다문화 사회와 인권

문 경 란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다문화 사회와 인권



문경란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1993년 가족이 함께 독일 남부에 있는 튀빙엔(Tuebingen)이라는 작은 대학도시에 1년간 산 적이 있다. 당시는 독일 통일의 기쁨을 뒤로하고 통일 이후의 여러 문제들이 사회에 노정되던 시점이었다. 실업과 상대적 박탈감은 일부 청년층을 자극했고 신 나치로 불리던 일부 극우파들은 인종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방화로 인해 터키출신의 한 가족이 희생되고, 동구권 출신 이주자들이 대로에서, 동네 가게에서 수난을 당하는 일이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다. 우리 가족도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튀빙엔의 시내 중심가에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독일인 십여 명이 “Alle Mensche sind Auslaender!”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묵묵히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번역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다”는 말이다. ‘누구나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다.’ 이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실이다. 세계화된 이 지구촌에서 누구나 모국인 이면서 외국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도 다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외국인이 겪는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그들이 학대받고 차별받고 핍박받는다면 이는 곧 나의 문제요, 나의 분노를 자아낸다는 말이다.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트린 힘, 그 도덕적 저력은 바로 이 같은 지성과 양심이 뒷받침되어 있었구나 라는 느낌! 그 당시 참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독일에서의 작은 경험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다문화라는 말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종차별적이며 동화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외국인력은 이주를 장려하고 단순노무 이주노동자는 억제하는 분리·관리 전략은 인종차별적이다. 결혼이주자라는 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을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시키느냐에 초점을 둔 정책은 동화주의적이다. 다문화 정책과 예산이 결혼이주자에게 집중되는 배경에는 순혈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강력하게 파리를 틀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라는 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다른 문화를 수용해서 주류 문화인 한국문화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주자 가정의 자녀를 지칭할 때 아이들이 이름대신 “어이, 다문화!” 라고 부른다



는 한 교사의 증언은 다문화라는 말이 이주자들을 어떻게 타자화 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진정한 다문화란 타자화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발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게 아닐까? 혹자는 다문화라는 말의 왜곡이 더 이상 바로잡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예 용도폐기하지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하든, 대안적 용어를 발굴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먼저 이방인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2 성찰과 토론, 그리고 공감대 - 다문화사회의 지름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동지를 든 안산은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이다. 한 연구(권은, 「다문화 공간에는 누가 사는가 - 다문화 공간을 둘러싼 갈등」, 2011)는 안산지역에서 이주자와 한국인이 광장이라는 공간을 놓고 갈등을 노정하는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누가 무엇을 하며 광장을 이용하는가에 대해 한국인과 비한국인이 거친 감정대립을 하며 주도권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양상이 한국사회가 이제 새로운 단계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공간적인 차원과 의미의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한국인과 이주자 모두의 삶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단 지역사회 공간사용의 문제뿐이겠는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감을 표현하는 모임이 온-오프 공간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장기적 경제불황 속에서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극단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레스토랑 출입을 막거나 상업시설의 이용을 거부한 경우, 버스에 타고 있는 동남아출신 외국인에게 “더럽다” “냄새가 난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하고 시비를 거는 사건 등은 언론보도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주자들이 한국에 평화적으로 적응키 어려운 환경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진보·보수를 떠나 일상적 삶의 일용할 양식이다. 하지만 보수정당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인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심이 있다면 ‘북한인권’만이 유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부터 향후 5년간 국민은 물론 이주자의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인권지수가 후퇴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우기 어렵다. 한국의 이주자를 둘러싼 인권 상황은 먹구름이 잔뜩 낀 양상이다.

다른 한편 이주자들의 문제의식은 갈수록 예리해지고 요구하는 권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자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감수하지만 다른 한편 노동조합결성이나 정착할 권리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되고 깊이있게 성찰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와 다수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초스피드로 한국 사회에 도입됐다. 이제 한국인과 이주자가 서로를 수용하는 방식에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 점차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토론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갖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

는 길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공감할 때, 진정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호혜적 질서도 가능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3 외국인도 인권의 주체

대다수의 이주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주과정에서 생명권과 인격권의 침해, 고용주로부터 받는 다양한 인권유린, 추방과정에서의 강제퇴거 등 수많은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고 필요 없을 때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해고시켜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법상의 권리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허다하고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여기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글로벌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몸은 마치 상품 수입하듯 취급되고 있다.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남녀를 같은 집에서 살게 하고서는 결혼이 완성됐다고 각 지자체는 앞 다투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여성에게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관습이 결혼이주 여성에게 공공연히 강요되고 있다. 지난해 결혼이주 여성들은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가정폭력에 항의해 “죽지않을 권리”를 외쳤다. 몇몇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한국에 결혼이주자를 보내지 않을 것을 결의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주자 인권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 갈비뼈 18대가 부러진 채 남편에 의해 살해된 한 결혼이주여성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담당판사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절절하게 고해성사를 했다.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2008년 1월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어떤 나라든 외국인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민’ 자격에 근거한 기본권이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배타성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도 인권의 주체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는 우리 헌법에 담긴 모든 기본권의 모체가 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해 일체의 사람을 인간답게 다루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다(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2009).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각종 국제협약 또한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면서 이주자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이주자에게 보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자에 보장해주어야 하는 인권의 범위와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흔히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려면 그 나라의 재소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라”고 한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인 인권을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는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이다. 일부 학자들은 자유권과 평등권(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 논의)을, 또는 여기에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권 일부를 선별적으로 더할 것(박경태)을 제시하고 있다. 시급히 보장돼야 할 사회권이라면 이주 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는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실업수당 등이 허용되고 있고 유럽연합 안에서는 시민과 영주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이주자의 인권상황을 유럽현실과 견주어 보면 너무도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협약의 이상은 국내법과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에 인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정서와 사회상황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자가 겪는 인권유린의 고통스런 현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의 하나다. 이 같은 치부를 외면하면서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다.

4 '벌거벗은 생명' - 미등록 이주자와 난민

이주자의 인권보장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집단이 미등록 이주자와 난민·무국적자이다. 이들은 '존재의 양극화'에서도 가장 극단에 위치한 취약 집단이다. 미등록 이주자는 흔히 불법체류자로 불리면서 문제가 있는 인물 또는 범죄자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체류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범죄자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 구조적으로 양산되었다. 미등록 이주자들은 당국의 위협이 두려워 숨어버리기 일쑤이고 이 때문에 착취와 폭력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기 십상이다. 또한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도 많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은 적법절차 위반과 그 폭력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로 비난받고 있다.

난민·무국적자는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 들이다. 이들은 인권증진과 보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국가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이주자들보다 훨씬 취약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다. 한국은 극히 제한된 수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으며 난민인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은 본질상 소수자와 약자의 것이다. 다수자는 그들이 가진 권력에 의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권에 기대지 않아도 대체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햇살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처럼, 인권은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다. 미등록 이주자와 난민·무국적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벌거벗은 생명' 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의해 미등록 이주자들을 정규화하는 것, 그에 앞서 미등록 이주자들의 산재보상과 공공의료시설 이용,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규범 및 헌법상의 인권기준에 근거해 난민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인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급히 확보하는 일도 구조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5 외국인인권의 요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거버넌스형 외국인 인권 지원 조직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이 자유롭고 존엄한 인권 주체의 위상을 보장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수립, 정책 개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내외국인 인권교육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민주적인 협치와 인권주체 당사자들의 참여 유도에 운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이주자들의 권리를 이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적극 보장해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국가의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거주자 중심의 도시 정치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2010)

이 같은 점에서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개소는 시의적절하며 따라서 기대 하는 바 또한 크다. 경기도는 한국 내 전체 외국인 인구의 30% 정도가 거주하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외국인 인구가 최고로 많은 곳이다. 또한 센터가 터를 잡은 안산은 한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당장 그 지역의 이주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정책들을 도시권 차원에서 신선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의 선도적인 지자체이자 외국인 인권보호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인권에는 마침표가 없다고 한다. 인권의 길은 종착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밟아야 할 노정이라는 것이다. 인권 보장과 실현의 책임은 공권력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몫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이주자 지원단체와 연구자 집단을 아우른 거버넌스형 조직이다. 이주자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임이 분명하다. 이주자들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인권의 대장정에 나선 경기도와 센터 관계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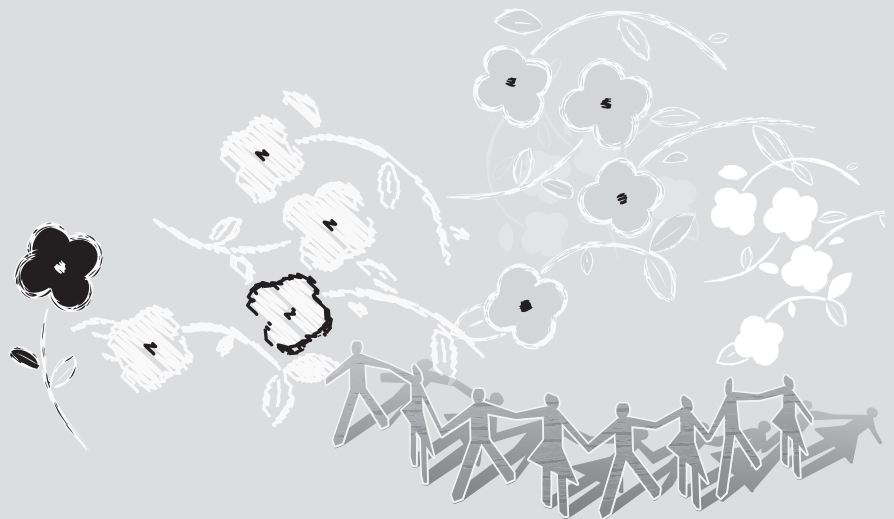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제 1부

기조 발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 사회 : 이재준 | 경기도의회 의원
- 기조발제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前 다문화학회 회장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의 비전과 과제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前 다문화학회 회장

목 차

- 1 다문화와 지역사회
- 2 지자체 다문화와 경기도
- 3 경기도 인권조례와 센터의 역할
- 4 몇가지 과제들
- 5 결 론

1 다문화와 지역사회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서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수동적인 집행기관에서 벗어나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조례와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위주, 실적위주, 성과위주라는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보완과정이기도 한다. 한국정부의 톱다운식 다문화정책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룩한 반면, 다문화정책 대상의 확산, 인권과 복지증진, 다문화인식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예산과 법령, 시설과 제도 등, 정책과 재원공급에서 일단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다문화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09년 1,033억원, 2012년 2,104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인 지원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다. 207개에 달하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전국에 350개가 넘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가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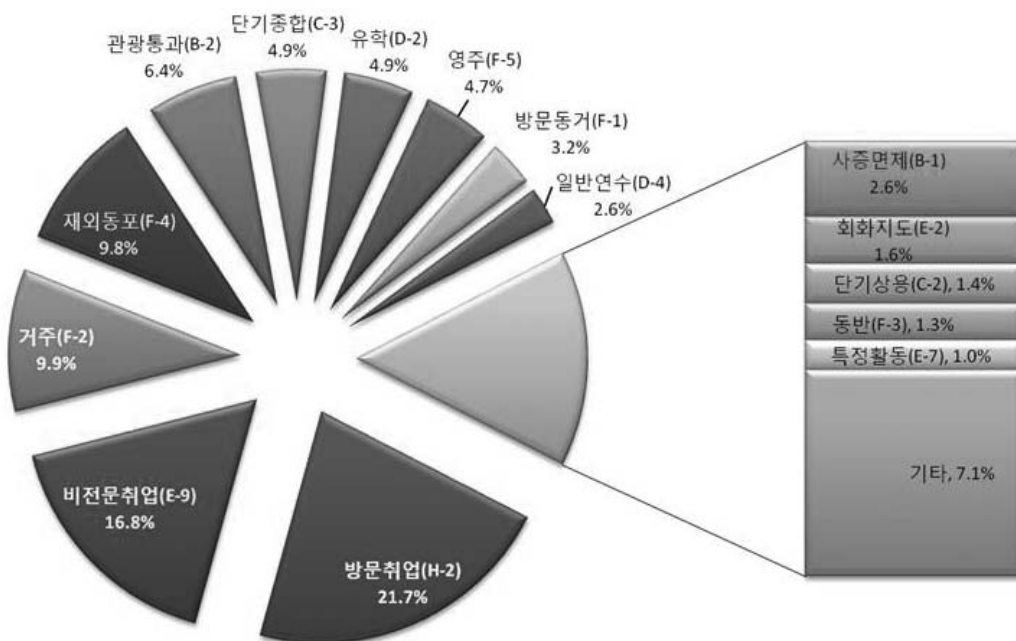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기도문 한국정부의 결혼이민자 중심 사회통합은 정책과잉과 부족의 논란을 낳고 있



다. 절반이상 다문화예산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지원에 집중되어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선진각국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아온 외국인노동자는 방문취업, 고용허가제, 재외동포, 산업연수생 등을 포함하면, 약 7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 강제추방, 의료지원면에서 인권유린과 차별시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 17만명에 이르는 다문화자녀의 교육과 취업, 약 2만명에 이르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도 태부족하여,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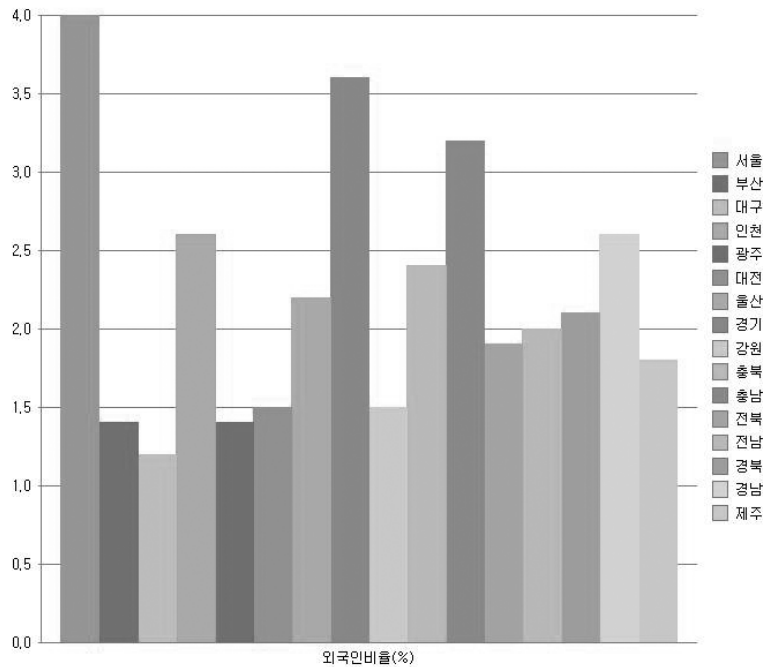
한국의 다문화인구는 2012년 8월 현재 약 143만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2.8%로 늘어났다. 1990년대초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2000년대이후 한국인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현상이 두드러졌다.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도입에 힘입어 급증하였다. 2011년말현재, 방문취업자(H-2)가 30.3만명,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 23.4만명에 이르고 있다. 불과 7년전인 2005년과 비교해도 방문취업자는 무려 6배, 비전문취업은 4배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가운데 약 1만명이 재입국하며, 체류기간도 4년10개월로 늘어나 정주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의 신부난에다, 결혼중개업의 글로벌화 등을 배경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해 2001년 25,182명에 불과했던 결혼이민자는 2012년 현재 144,21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귀화자는 76,473명, 외국인자녀는 168,5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학생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적인 외국인증가율은 최근 20년간 무려 20배이상에 이를 정도이다. 아래 <그림1>은 자격별 체류외국인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방문취업이 21.7%, 고용허가제가 16.8%, 결혼이민자가 9.9%, 재외동포 9.8%, 유학생이 4.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자격별 체류외국인 구성현황 (2011년말)

전국적인 외국인증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역시도별로 본다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42.5만명으로 총인구의 3.6%,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총인구의 4%로 40.6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에 총인구대비 약 2~3%, 6~7만명의 외국인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그림2〉 광역시도별 외국인비율을 참고할 것).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수도권을 합치면, 거주외국인이 90.5만명에 달하여 총외국인의 64% 즉, 2/3가 집중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강원도와 제주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2〉 광역시도별 외국인비율(%)

〈표2〉는 광역시도별 유형별 외국인주민 통계를 살펴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유형별로 시도별 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8월현재 외국인근로자는 58.9만명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약 21만명,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를 합치면 약 22만명이며, 다문화자녀는 벌써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다. 유학생도 8.7만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 2.8%이던 외국인인구는 2020년에 5%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선진국수준인 8%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지자체도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인구가운데 다문화인구가 5%이상인 경우, 다문화사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하는 기준치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외국인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인구 5%이상 지자체는 경남 함양군, 서울 관악구 등 6개지역이 추가되어, 2012년현재 총22개 지자체로 증가하였다. 경기도 안산시가 60,583명, 서울 영등포구 57,180명, 구로구 43,239명, 경기도 수원시 40,537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표3〉외국인인구별 지자체숫자를 본다면, 외국인주민이 2만명이상 거주하는 지자체가 13개, 1만명이상인 기초지자체가 무려 42개단체로 올해들어 서울서초구, 경남 거제시, 대구 달서구, 인천 남구 등, 4개지역이 추가되었다.



<표2> 시도별 다문화가정 인구와 비율(2012)

구분	주민등록 인구	인구비율	외국인 주민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자녀
합 계	50,734,284	2.8%	1,409,577	588,944	144,214	168,583
서울	10,249,679	4.0%	406,293	150,433	31,217	26,008
부산	3,550,963	1.4%	49,329	16,460	6,498	7,375
대구	2,507,271	1.2%	31,231	11,288	4,241	5,125
인천	2,801,274	2.6%	73,588	30,620	8,202	9,552
광주	1,463,464	1.4%	20,649	6,333	2,966	3,926
대전	1,515,603	1.5%	22,499	3,992	3,359	3,847
울산	1,135,494	2.2%	25,163	11,457	2,627	3,582
경기	11,937,415	3.6%	424,946	209,784	38,593	42,365
강원	1,536,448	1.5%	22,731	5,584	3,837	5,780
충북	1,562,903	2.4%	37,563	15,734	4,511	6,445
충남	2,101,284	3.2%	67,157	30,442	7,413	10,023
전북	1,874,031	1.9%	35,281	9,444	5,765	8,766
전남	1,914,339	2.0%	24,886	12,934	6,758	10,763
경북	2,699,195	2.1%	42,041	23,973	7,109	10,251
경남	3,308,765	2.6%	69,323	46,847	9,133	12,762
제주	576,156	1.8%	7,633	3,719	1,625	2,103

<표3> 외국인인구별 지자체 숫자(2012)

계	2만명이상	2만~1만	1만~5천	5천~1천	1천~5백	5백~1백	1백명이하
230	13(+2)	29(+2)	41(+1)	97(+1)	42(▲5)	8(▲1)	-

2 지자체 다문화와 경기도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연쇄테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문화정책을 전개해 온 유럽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다문화에 대한 국내합의 부족, 반이슬람정서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이행은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다. 유럽중앙정부의 장관들은 유럽사회내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가 유럽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유럽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4년 영국 Comedia 재단의 후원을 받아 유럽평의회산하의 인터컬처럴 도시프로젝트(InterCultural City Project)를 설치하였다. 유럽도시의 단체장들은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도시활력과 혁신, 창조와 성장의 원천이라는 새로운 도시이념을 만들어 가면서, 매년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¹⁾

1) 유럽평의회 인터컬처럴시티 프로젝트 홈페이지참고 <http://www.coe.int/t/dg4/cultureheritage/culture/cities/> (검색일: 2012.10.30)

유럽연합과 유럽의회는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높이고 상호대화를 촉진하고자 2005년 포르투갈에서 Faro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정한 인터컬츨러 시티는 분절된 리더십이나 소규모의 정책변화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것은 제도화된 도시정부와 시민사회가 참가한 비전의 공유, 공동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인터컬츨러 시티 프로젝트는 도시간 연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²⁾ 여기에는 현재 유럽의 주요도시인 런던, 리스본, 암스텔담, 더블린, 코펜하겐, 오슬로, 보트실카 등을 포함하여, 23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자. 2011년 현재 일본내 외국인등록자수는 2,078,508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³⁾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한국과 달리,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비전과 시책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전 식민지배를 반성으로 재일조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다문화정책의 기초로서 '내향적 민제외교(內なる民際外交)'가 혁신자치체이었던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 출발한 것은 일찌감치 1984년 시점이었다. 이때부터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문날인 철폐, 차별금지, 사회복지와 연금, 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와 참정권 부여, 교육환경과 주거·취업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기초단체가운데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곳도 많고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등은 선진적인 다문화시책과 프로그램을 시도해오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험도 지혜도 풍부하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선진적인 다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착시키는 다문화리더십이 기대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은, 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다문화도시의 미래비전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럽평의회의 인터컬츨러 시티 프로젝트, 일본의 외국인 집주도시회의, 한국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도시간 다문화서밋트를 들 수 있다.

경기도내 안산시는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 왔다. 안산시에서 2012년 11월 7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설립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취지내용을 보면, 세계적인 흐름인 다가치, 多문화시대를 맞아,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 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설립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지자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

2) The genuine intercultural city cannot emerge from disconnected initiatives or small-scale policy changes. It can only be the result of a shared vision and the concerted efforts of a range of institutional and civil society stakeholders. Therefore the Intercultural City Strategy includes a wide range of actors in the city: local authorities, professionals, social service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the media. Focusing on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sults, the Intercultural City Strategy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s and alliances within each city but also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3) 이하는 일본법무성출입국관리국 통계(2011.12)을 참조. (검색일 2012.10.28)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89591>



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설립취지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인구 5천명 이상인 기초단체가 모여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른 도시간협의체로서, 다문화관련 시책 조사연구, 문화관련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5, 인천1, 광주1, 경기도14, 충남2, 경남1 등, 24개도시가 참가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구로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의 안산, 수원, 평택, 화성, 성남, 부천, 시흥, 용인, 고양, 김포, 포천, 광주, 안양, 남양주시이다. 충청남도는 천안과 아산,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중앙정부도 점차 지자체중심의 다문화시책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에 이어서, 2012년 3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운영해 왔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통합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표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⁴⁾

2008년 3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삽입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분명히 설명한 바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는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예방,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과 홍보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에서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제8조는 가족상담과 가정폭력 예방, 외국어통역 서비스, 법률상담 지원을 적고 있다.

중앙정부는 외국인주민수 5만명이상, 인구대비 2.5%이상인 광역시도에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⁵⁾ 2011년 6월 현재 26개지자체(광역시8, 기초18)에서 과단위 3개, 계단위 23개 다문화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125명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다문화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기초단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인구 27%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에게 전체예산의 약 50%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40%가 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2012년도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문화사업은 804개과제로 전체예산만 1,7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개방분야가 19%,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회통합 분야가 79.2%로 이를 합치면 전체사업의 98.2%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12:30). 한편, 2012년도 지자체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 경기, 충남, 강원, 경남,

4)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4월 제정하였고, 이어서 영암군 거창군 경기도 등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모아서 하나의 조례로 만든 경우도 많다. 고성군, 거제시, 영월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김범수(2012). "지방정부의 정책 평가와 연계 및 조정방안" 을 참고할 것

5) 외국인정책위원회 편(2012). [2012년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4항

경북, 인천, 전남, 전북 등의 순서이다.

〈표4〉 경기도내 다문화인구의 현황을 살펴보자. 전체 다문화인구가운데 약30%인 424,946명이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국적취득자도 비슷하다. 유학생은 비교적 적은 10,392명으로 전국대비 11.9%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자녀는 25%로 4명가운데 1명꼴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내 다문화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81%,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 국적취득자가 9%, 외국인자녀는 10%로 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49.3%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등으로 되어 있다.

〈표4〉 경기도내 다문화인구 현황(2012)

구 분	다문화인구	남성	여성	전국대비비율	경기도구성비
합 계	424,946	229,668	195,278	30.1%	100%
외국인 (국적미취득)	344,406	200,052	144,354	30.8%	81.0%
외국인근로자	209,784	144,724	65,510	35.6%	49.3%
결혼이민자	38,593	6,425	32,528	26.8%	9.1%
유학생	10,392	5,305	5,087	11.9%	2.4%
재외동포	41,959	22,029	1,783	31.1%	9.9%
기타	43,318	22,019	21,299	26.7%	10.2%
국적 취득자	38,175	7,953	30,222	30.9%	9.0%
혼인귀화자	22,327	1,812	20,515	29.2%	5.3%
기타취득자	15,848	6,141	9,707	33.7%	3.7%
외국인 자녀	42,365	21,663	21,702	25.1%	10.0%
외국인부모	3,663	1,830	1,833	35.0%	0.9%
외국인-한국인부모	35,447	18,159	17,288	24.3%	8.3%
한국인-한국인부모	3,255	1,674	1,581	27.0%	0.8%

(통계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2년 8월)

〈표5〉 경기도내 시군구별 다문화인구의 거주상황을 살펴보자. 다문화 1번지 안산시에는 60,583명에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등 주로 경기도 남부나 고양시 등, 중소기업이나 공업단지에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반가까운 외국인근로자가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 시흥시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역시,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등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대도시에서 많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나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에 많으며,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등, 외곽 중소도시에서 적게 거주한다.



재외동포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주변 중규모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낮다. 다문화자녀도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을 반영하고 있어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등에 많이 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남부 대도시에서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역시 중소기업과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여성도 대도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주거지로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문화인구가 적은 지자체라도 2천명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과 인권옹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인식 개선 등의 사업은 어디서나 실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경기남부나 밀집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역전체에 걸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5> 경기도 시군구 유형별 다문화인구 (2012)

지자체	다문화인구 (인구비율)	외국인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다문화자녀
경기도	424,946(3.6)	344,406	209,784	38,593	10,392	41,959	42,365
수원시	40,537(3.7)	33,240	17,662	3,579	2,004	3,532	3,197
성남시	27,457(2.8)	22,113	10,128	2,603	774	4,987	2,594
고양시	19,627(2.0)	15,430	7,634	2,317	258	3,004	2,320
부천시	26,148(3.0)	19,182	10,427	2,863	513	2,134	3,250
안양시	11,760(1.9)	9,040	4,495	1,254	423	1,455	1,312
안산시	60,583(8.5)	49,825	31,448	4,800	552	5,509	4,490
용인시	22,340(2.5)	19,033	9,786	1,779	1,940	3,583	1,922
의정부시	6,758(1.6)	4,709	1,703	1,141	77	819	1,147
남양주시	9,208(1.6)	6,416	3,326	1,435	38	949	1,874
평택시	18,032(4.2)	14,769	9,794	1,593	179	1,472	1,848
광명시	7,838(2.2)	5,556	2,672	969	46	832	1,134
시흥시	27,715(6.9)	22,684	15,023	2,240	277	2,517	2,455
군포시	8,039(2.8)	6,355	3,446	865	370	761	835
화성시	32,950(6.4)	29,353	22,616	1,895	946	2,274	2,192
파주시	11,875(3.1)	9,495	6,457	1,216	22	1,012	1,460
이천시	6,118(3.0)	4,761	3,429	681	29	302	961
구리시	2,532(1.3)	1,729	695	462	16	269	509
김포시	15,106(5.9)	13,331	10,208	861	276	1,157	970
포천시	13,431(8.5)	11,727	9,000	835	419	797	1,054
광주시	12,452(4.7)	10,434	7,847	902	52	842	1,196
안성시	9,503(5.3)	8,165	5,511	678	806	634	832
하남시	2,804(1.9)	2,063	1,143	395	16	290	449
의왕시	2,053(1.4)	1,530	817	307	27	230	331

지자체	다문화인구 (인구비율)	외국인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다문화자녀
양주시	9,651(4.8)	8,283	6,093	750	10	772	923
오산시	7,529(3.9)	5,609	3,143	830	119	619	830
여주군	3,459(3.2)	2,714	1,922	315	109	195	499
양평군	2,005(2.0)	1,422	725	315	27	221	403
동두천시	3,600(3.7)	2,866	1,647	447	15	305	434
과천시	754(1.0)	619	157	78	5	288	82
가평군	1,903(3.2)	1,106	314	393	45	108	638
연천군	1,179(2.6)	847	516	155	2	90	224

(통계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2년 8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인구가 1만명이상인 지자체는 2007년 9개에서 2012년8월 현재 14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전체외국인의 약 2/3가 거주하는 곳이고, 국내 외국인 증가율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표6> 지자체별 다문화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2만명이상인 곳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이며, 1만명이상인 곳이 고양시, 안양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광주시이다. 경기도 남서부 도시와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에 분포하고 있다.

1만명이하인 도내 지자체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이다. 경기도 동북부 중소도시에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과천시는 높은 집세와 생활비, 행정도시로서 특성이 반영되어 754명의 외국인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숫자가 적다.

<표6> 경기도내 다문화인구별 지자체 현황

계	2만명이상	2만~1만	1만~5천	5천~1천	1천~5백
31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고양시 안양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과천시

아래 <표7>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다문화시책이 활발한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표시한 것이다. 제1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한글교육, 문화체험, 의료서비스, 생활정보지 발간이다. 제2단계는 취업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다문화자녀 교육, 노무상담, 다문화축제, 조기 정착지원, 임시 쉼터 제공 등이다. 안산, 수원, 천안시에서 각각 실시하는 외국인공동체 지원, 외국인대표자회의, 외국인시책 협의회 운영은 가장 높은 제3단계에 속한다.⁶⁾

6) 박세훈(2011.12). [다문화정책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울산광역시)



<표7> 주요 지자체 다문화시책 프로그램

구 분		수원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천안	김해
1단계	한글교육	○	○	○	○	○	○	○
	문화체험	○	○	○	○	○	○	○
	의료서비스	○	○	○	○	○	○	○
	생활정보지	○			○	○		○
2단계	취업교육	○	○	○	○		○	
	다문화이해교육	○	○	○	○		○	○
	다문화자녀교육				○	○	○	○
	노무상담	○			○		○	
	축제개최	○				○	○	○
	초기 정착지원		○		○	○		
	임시쉼터						○	
3단계	외국인공동체 지원	○			○		○	
	외국인대표자회의	○						
	외국인협의체 운영	○			○			

3 경기도 인권조례와 센터의 역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피해를 받고 있다. 결혼이주이성의 50%이상이 최저생활비 이하 소득수준으로 절대 빈곤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적지위의 한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외국인노동자는 하루 2교대, 평균 15시간이상의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높은 산업재해율과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영주목적이 아니라서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조항이 있으나 제도미비로 인적, 물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자녀 60%이상이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학교입학이 불가능했으며, 15%는 학교입학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경험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⁷⁾

미등록외국인은 법적 보호가 가장 취약한 소수자집단이기도 하다. 2011년12월현재 167,780명, 총외국인 대비 12.3%의 미등록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이후, 미등록외국인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외국인은 2002년 289,239명에서 점차 줄어들면서 2004년 209,841명, 2006년 211,988명, 2008년 200,489명, 2010년 168,515명, 2011년 167,780명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몽골 출신의 경우, 절반이상이 고용허가제이후 미등록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⁸⁾

7)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내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8) IOM이민정책연구원(2011.05). 불법체류자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

외국인근로자의 주요 체류자격인 산업연수(D-3), 고용허가제하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의 방문취업(H-2) 등은 가족동반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다문화가족의 존재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또한 합법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한을 받고 있어 정책대상이나 지원내용에서 한계가 있다. 법률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이므로 결혼이민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는 취약하다.⁹⁾

〈표8〉은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외국인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한국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 외에도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차별대우, 외국인 아동, 난민과 망명신청자, 무국적자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외국인그룹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안이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이 고문, 비인간적 대우, 노예, 강제노동, 아동 노동,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시민과 외국인의 구분과 상관없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 규약은 건강, 주거, 교육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권은 집단 교섭, 사회 보장, 공동한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⁰⁾

〈표8〉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국제규약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난민	기타
사회권	6	2		5	7
자유권	2				
인종차별	14	2	9	3	17
여성차별	2	5			2
아동권	1		3		
합계	25	9	12	8	26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8조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이미 외국인인권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2012년12월 현재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9) 위은진(2011.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확장의 과제" [다문화사회의 한국사회와 인권]
 10) 이병하(2011.10). "국제규범에서의 이주민연인과 시민권" [다문화사회의 한국사회와 인권]



달서구 등, 8개 지자체가 외국인 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 10월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명기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고, 그 목적을 명기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 지원조례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참여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 결과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은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본계획에는 인권의식 함양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인권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경기도 외국인인권 지원조례 제8조에서 ① 도지사는 인권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권관련 단체를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지정·위탁 할 수 있다.

- ②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도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정부의 외국인관련 시책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외국인 실태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외국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외국인지원센터는 건강권 침해, 부당행위, 차별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게 되어 있다.

1. 외국인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과 관련 정책 유관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의 인권관련 사항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1, 2차년도 시책개발의 어젠다를 설정하였다. 인권친화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 실무 매뉴얼 제작 등이 그것이다. 1차년도 시책개발 사업은 도내 지자체의 외국인행정이 국민중심의 관행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와 담론 분석, 공공부문 인터페이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2차년도 사업목표는 인간중심의 외국인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정책 대상 집단의 재개념화, 공공부문 인터페이스 종사자 선발기준과 업무 규범, 인권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방안, 인권친화적인 업무평가 시스템, 지역특화적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외국인 인권친화 지자체와 인권친화 기관인증제가 2차년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표9〉를 참조).

〈표9〉 인권지원센터의 단계와 분야별 사업어젠다

단계별 사업 목표	1단계	2단계
	초기기반구축 및 어젠다 설정	센터 위상 공고화 및 어젠다 활성화
정책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실무 매뉴얼 제작
실태 조사	국제 수준에 조응하는 사회통합지향의 외국인 정책 개발의 준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외국인 정책의 포괄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한 실태 조사(무국적자 가족 실태조사)
교육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의 외국인 인권의식 및 규범의 주류화	외국인 인권 교육의 제도화 기반 구축(교재 발간)
권리 구제	인권침해 범주화,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 네트워크 구축	이주민 인권 수첩 제작 보급,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 네트워크 활성화(당사자 참여 활성화)

4 몇가지 과제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조례가운데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조례를 바탕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몇가지 전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자체주도의 다문화정책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지나치게 큰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는 채용과 법령면에서 상대적으로 재량권과 행정범위가 좁은 편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의 최전선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경기도조례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권지원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지정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중앙부처의 계선조직에 묶인 단순한 정책집행 기관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성넘치는 다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주



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행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와 재외동포 등, 정책대상에서 누락된 다양한 유형의 행정서비스를 검토,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인복지센터가 각 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기능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옹호, 차별방지에 힘쓰고,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균형잡힌 다문화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급증해가는 다문화자녀, 추산 2만명에 이르는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정책도 부족하다. 인권개념을 널리 확장시켜 정책사각 지대에 빠져 있는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하였지만 아직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수요를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다문화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차별방지와 인권증진에 그 역할과 기능의 중심을 두고 있다. 국내 미등록외국인은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16.7만명에 이르고 있다. 비전문취업자가 무려 40%가까운 불법체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문취업 체류자의 경우에도 불법체류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베트남출신 외국인은 현재도 불법체류 비율이 높고 정주화가능성이 높은 결혼이민자에서도 그 비율이 높아서 우려할 만한 위험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필리핀 출신 예술홍행 체류도 미등록외국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¹¹⁾

미등록외국인들은 거주환경이나 근무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임금체불, 인권유린, 구타폭행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나 인권조례에서 제외되거나, 정책서비스의 수혜대상인가 아닌가 논란이 되는 경우마저 있다.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문화자녀는 언어와 외모등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쉽사리 차별 위협에 노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재정적이거나 법적인 지원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과 사례집 발간, 지역과 학교, 직장에서 인권교육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법령과 재원을 제공하여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아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씩 제도와 인식을 바꾸어가면서 이문화간 공생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지자체주도의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점에 있다. 중앙정부의 시혜적 다문화정책은 정책수급의 불균형과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 국민과 외국인을 분리시켜, 중앙부처-지자체-외국인주민으로 이어지는 수직형, 분리형 정책집단을 만들 위험마저 있다.

지역주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다문화공생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켜 가야 한다. 다문화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대화와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외국인만의 인권에 집착해서는 안

11) IOM이민정책연구원(2011.05). [불법체류자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

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다문화이해 소양을 지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이제 갓 발족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주요업무를 지나치게 넓게 확산시키지 말고 선택과 집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정책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주체별, 대상별, 분야별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책주체로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다른 다문화기관들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 블루 오션을 개척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과 조직으로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느끼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에 접목시켜 개선해가야 한다. 연구와 실무 모두 중요하나, 센터는 실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보다는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업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증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4 결론

다문화 선진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앙정부 주도 다문화정책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완해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위주, 실적위주, 성과위주라는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한다. 한국정부의 톱다운식 다문화정책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룩한 반면, 다문화정책 대상의 확산, 인권과 복지증진, 다문화인식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인하여 정책공급의 적정성, 균형성, 현장성 등이 떨어지면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배분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부재 등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균형을 유발하고, 유형별, 대상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단체간 다문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전국의 각 지역, 각 분야에서 균형잡히고 균질적인 정책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 공공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간 균형잡힌 역할분담,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에 대하여 각 지역별로, 각 유형별로, 각 대상별로 수요자 입장에 맞추어 제공되는 적정하고 균질적인 다문화시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들 정책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바람직한 정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국내외국인가운데 2/3가 거주하는 광역단체이며,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진적인 정책실험이 거듭되고 있는 곳이다. 다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경험도 풍부하며, 재정적



역량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앞으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선진적인 다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착시키는 다문화리더십이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기대하는 기능과 역할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주도하는 장점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영역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들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것, 외국인차별 방지와 인권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서 미등록외국인의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학교현장에서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 등의 인권옹호에 기여할 것, 열린 논의와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천천히 모색해 갈 것,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지나치게 업무를 확장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에 관심을 기울일 것 등이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설치는 매우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공공정책상 프론티어 작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제 겨우 경기도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사회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정착되고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빌어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내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김범수(2012). “지방정부의 정책평가와 연계 및 조정방안”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 김이선 외(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대식(2010.04). “농촌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국토] 국토연구원.
- 박세훈외(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2): 지역중심형 외국인정책추진방안]. 국토연구원.
- 법무부(2010).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법무부(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9개도 지방자치단체].
- 법무부(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사회통합위원회(2012).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2012.10.30./서울프레스센터).
- 아시아연구기금(2012). [문화적 다양성의 사회와 한일비교] (2012.09.08./고베대학).
- 양기호(2006.6).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양기호(2009). “일본의 다문화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 양기호(2010).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
- 양기호외(2010). [한국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방안]. 한국다문화학회 연구보고서.
- 오경석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 위은진(2011.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확장의 과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인권].
- 이병하(2011.10). “국제규범에서의 이주민인권과 시민권”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인권]
- 일본국제 교류기금 ·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 하마마쓰시(2012). [일본 · 한국 · 유럽 다문화공생도시서밋트 2012 (2012.10.26./하마마쓰시)].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20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자료집]. (2012.11.07./안산시).
- 정명주(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실태분석: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
- 최병두(2011). [다문화공생: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 최 흥(2011.05). “한국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의 이민정책을 말한다]. 법무부.
- 한국다문화학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세미나(2011.10). [다문화시대의 한국 사회와 인권]
- 한승준(2009). [한국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연구보고서.
- 駒井洋(2006). [グローバル時代の日本型多文化共生社会]. 東京: 明石書店.
- 小井土彰宏 編著(2003). [移民政策の国際比較]. 東京: 明石書店.
- 日本総務省(2006.3).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 日本比較政治学会(2009). [国際移動の比較政治学]. 東京: ミネルバ書房.
- 山脇啓造(2007.1), “地方自治体と多文化共生”. [自治体国際化フォーラム].
- IOM이민정책연구원(2011.02). [경기도 외국인(이민)정책 종합계획 연구].
- IOM이민정책연구원(2011.05). [불법체류자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
- Jones, Gavin W. 2012. “International Marriage in Asia: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174.
- Kymlicka, W. & He, B. ed. 2005.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Univ. Press.
- Pierre, J. 2000.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 Pres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제 2부

패널 토론

이주민 인권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역할

- 박경태 | 성공회대 교수
- 이라 | 경기도의회 의원
- 이란주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최영일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 마뽀 알엄 | 프리포트 대표
- 소라미 | 공감 변호사





새 센터, 새 가치, 새 희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새 센터는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존의 수많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센터는 물론 다른 여러 유관 기관과 단체들도 서로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①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센터의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본 센터는 외국인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시민단체가 해왔는데, 제 생각에 이런 역할의 일부를 센터가 가져와서 할 것 같습니다. 지원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복 또는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센터로 보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리적인 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센터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민원 해결 사업이나 복지 사업들을 벗어나서 큰 틀에서의 ‘공익’에 해당하는 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한편 넓은 의미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도 일종의 역할분담과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위한 현재의 업무들을 계속 담당할 테니, 새로 시작하는 센터는 다른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담을 해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주노동자, 국내 체류 재외동포, 난민 등과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누구까지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센터의 방향



잡기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③ 센터와 ‘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센터가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루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일은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나 산재보험 혜택 등에 관한 문제는 센터가 직접 맡기보다는 노동부의 관련 부서로 보내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외국인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과 관련된 문제를 한 가지 더 지적해봅니다. 인권지원센터가 비록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곳이지만, ‘관’에서 독립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관’이 저지르거나 방조하는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센터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하며, 그것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른 기관/단체들과의 관계와 역할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는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비록 센터가 외국인의 인권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또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이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이주민만 떼어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해야 비로소 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신 국가나 피부색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급이나 계층을 고려하지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인권이라고는 하지만, 인권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최저생활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종차별만 없으면 저절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권은 최소한의 물질적 삶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서 양극화, 분배정의, 부의 편중, 기본소득 등의 개념들을 센터가 관심을 갖는 가치에 포함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겠지만,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센터가 아예 다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흐름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판을 짜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관/단체들이 하지 않고 있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실험하고 이뤄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제 상황 때문에 삶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외국인정서와 외국인혐오로 나아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센터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내가 존중받는 인격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센터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문화와 지역사회

다문화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회변화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도 관계 기관의 성과 및 실적 나열과 그 회원 수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지원 예산입니다. 사업 및 기관 운영비에 대다수의 금액을 활용하게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금액의 객관적인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2 지자체 다문화와 경기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및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의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내 다문화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시행하고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내용과 같이 외국의 다양한 외국인 정책 중에서 우리 나라와 지역에 적합한 부분을 채택해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일방적인 형태의 정책 수립과 시행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양방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밑에서 위로 자료와 정책제안이 올라가는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각 지역의 사회통합 및 네트워크 특성을 존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단체가 서로 긴밀히 소통, 협력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지자체간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장 담당자들의 연수 및 교육 기회를 만들어 각 지역 우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논의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문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 배출해야 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 혼한 야근과 토/일요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해야 하는 현장 담당자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합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단순히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주거나 재능 기부, 환경개선 등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등 그들이 노동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발굴하는 것도 고려해볼 방향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방 도시에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도로 등 작은 구석에도 안전하고 맑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시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들과 쾌적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이 성숙해가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정책수립에 있어 이러한 점을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하겠습니다.

③ 경기도 외국인인권조례와 인권센터의 역할

외국인 인권센터의 설립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려 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권센터가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안산시에서 설립된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국내의 모든 외국인들이 인권침해에 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해결요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외국인 인권센터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이주민의 건강권 침해, 부당행위, 차별 등 여러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외국인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한 사건, 이주 청소년의 강제출국, 보호소에서 사망한 이주민 사건 등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해 나가는데 주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만은 인권지원센터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정신으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모든 기관들이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민간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의 의미

- 환영과 기대 속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합니다.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법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는 지금, 『인권』의 틀로 외국인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낸 경기도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현재 민간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법), 출입국관리법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가 외국인 노동력의 수급과 활용·관리, 즉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측면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등에 담긴 민족 차별적 내용과 사업장이동 제한, 외국인노동력 단기순환 원칙과 영주자격 원칙적 박탈, 가족동반 원칙적 금지 등의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이처럼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평등한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국내법과 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인권이 침해되어 가혹한 상황에 처하기 일쑤이며, 내국인은 뜻하지 않게 '이주노동자를 하등한 존재로 보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급한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병합하여 '평등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국민과 민족 중심의 이주정책'에서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의 1/3 가량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의지만 가진다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시범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전국에 파급할 수 있는 유일무



이한 단위입니다.

- 비록 형식과 규모는 다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내 법제도를 뛰어넘는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기대하듯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또한 보편적 인권을 준거의 틀로 삼아 국내법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눈높이를 두고 외국인의 인권과 이주정책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견인 역할 필요

- 경기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안산시 등 일부는 선진적인 다문화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에 좋은 정책의 모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외국인주민 수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내 기초단체 간 격차는 특별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향후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지자체가 다문화정책을 고민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던 데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마다 거주 외국인의 수와 특성, 주요 산업과 경제, 자원의 차이가 크고, 주민의 인식과 생활 패턴 등이 다양하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사회통합을 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별로 각각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아직은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등이 부족하여 요원한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경기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부양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기준이 될 다문화정책을 개발하여 관할 기초단체에 보급·독려하고, 기초단체의 집행부와 의회를 교육하며, 정책과 조례, 예산과 집행을 모니터링하여 기준선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가장 큰 과제는 정착과 발전

- 인권을 주장하고 지키고자 하는 일은 늘 견제와 충돌이 뒤따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는 ‘국적, 인종,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은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상의 모든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를 환영하며..

경기도외국인인권 지원센터의 개소는 축하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먼저 경기도는 2012년 말 현재 지자체 6개소에 외국인지원센터 혹은 복지센터를 개관했다. 물론 이외에도 경기도내에는 지자체별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 기관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관련 기관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교과부의 KSL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기관들이 대체로 외국인노동자(E-9), 방문취업자(H-2), 결혼이민자, 난민, 다문화가정자녀등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동소이한 한국어등의 교육, 각종 상담, 문화관련 프로그램등 서비스중심의 사업들을 중복적, 중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 자체를 인권이라고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사 및 연구, 평가등의 업무를 주로하는 센터가 부재했다. 주로 각종 연구소나 민간단체등에서 프로젝트성 실태조사나 연구 및 평가를 해왔던 실정이다.

나아가 정책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통합적이며 깊이있는 실태조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조사 및 개선을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제작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책제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절실했던 차에 경기도인권조례 제정 및 이에 따른 금번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의 개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②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또한 외국인 145만 시대에 중앙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적인 외국인 정책은 이중적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혼돈을 초래할만큼 기괴하기까지 하다.

2012년 이주민권연대 정책자료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현황과 문제들 즉 난민,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재외동포간의 차별문제, 전문인력(E-7), 예술홍행(E-6)인력의 인신매매관련 인권침해, 선원이주노동자(E-10), 미등록체류자의 인권, 보호소내의 인권침해 문제등 이들이 처한 수많은 인권침해의 현실과 경우의 수를 방치할 뿐 아니라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개소는 시기 적절하며 동시에 그 기능과 책무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그 영향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 이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과 복지를 결정하는 법과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하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개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제자가 ‘4몇 가지 과제들’에서 지자체 주도의 다문화정책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긍정적인 과제를 제시했지만 의미를 이해하고 대안을 예측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까닭이다.

중앙부처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거나 좀 더 조정능력이 있는 이민청과 같은 담당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자체 수준, 즉 실행수준에서는 통합이나 다문화주의의 진보보다는 첫 문단에서 언급한 다양한 중앙부처 소속의 지역단체들간의 소모적 경쟁과 자괴감 나아가 이주민당사자들의 혼돈과 피로감, 소외감과 차별을 초래하고 사업을 위한 동원 대상화, 타자화의 경험들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이동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들, 업종간 이동불가로 인한 미등록 체류자의 양산, 컨테이너와 같은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망, 높은 돌연사율, 소음으로 인한 청각손실등이 발생하고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제한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은 없기에 이주자의 인권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생계형 기업들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몰아넣는 반인권적이며 반다문화적인 정책이자 나아가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라고하는 국가브랜드를 갉아먹게 하는 이같은 소탐대실의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개입과 조정의 한계점 또한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러한 한계점이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의 존재의미와 가치 혹은 과제나 인권센터로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욱 경기도 인권지원센터의 필요를 절감하게하는 지점이다.

발제자가 대안으로 제시했듯이 경기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기도내의 다문화지형도를 미시적이고 섬세하게 그려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필자가 속한 김포시의 경우 발제문의 표5에서 보여주듯이 내국인대비 5.9% (15,106명으로 경기도에서 5번째 비율)의 다문화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70%(10,208)에 달하며 미등록 노동자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훨씬 높아질 것이다. 특히 남성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경기도에서 1위로 가장 높다. 5000개가 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이며 마을버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골짜기마다 산재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49% 정도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체가 많은 수원과 비교해서 열악한 처지의 외국인노동자중심의 정책이 비중있게 펼쳐질 때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제시한 1, 2차년도 시책개발의 어젠더는 발제자가 이미 언급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정과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어젠더들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위해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이주민 당사자들의 소리를 대변해주고 감추어지기 쉽고 왜곡되기 쉬운 인권침해의 현실과 가능성과 경우의 수들을 때로는 다소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드러내주고 더욱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바로 이 영역이 발제자가 언급한 현시점에서의 블루오션중에 한 영역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소리가 없거나 현장에서의 정보가 부족해서 인권 침해 가득한 정책들이 양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소리의 부재야말로 아무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왜곡된 또는 정책입안자들의 손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진실로 믿게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껏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부재는 필자가 초반부에 언급했던 지역에 자리잡고 정책을 실행하는 서비스중심의 수많은 기관, 단체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그 많은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여력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힘있고 논리 정연한 목소리로 나아가 더 나은 길과 전망을 알려주는 소리로 되살려주지 못하고 묵혀 두고 유실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미 그러한 소리를 경청하고 발굴해낼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복지센터, 다문화 서포터즈,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안에 이미 거의 모든 형태의 체류자격별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기도내에서 발굴해내고 경청하는 소리들은 국내 145만 이주자들의 다문화 생태계의 축소판으로서 손색이 없다할 것이다.

오늘의 다문화주의의 정체현상과 피로감은 재원의 부족도 아니요, 정책이나 법안의 부재나 시민사회의 공감기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조급하게 제정했던 법들과 조직들과 정책들과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지나친 맹목적 열심과 성과주의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나 지속성, 장기적인 지향점이 없는 정책,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밀실에서 소수의 이해당사자들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듯한 외국인력정책 운영에 그 책임의 비중이 더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정책의 실행단계인 지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행정조직 나아가 주민자치센터 등을 공유하지 못하고 별도의 법과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현실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고 이에 인터페이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의 변화도 물론 시급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수나 참여율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 할 수 있다. 어떤 비전과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더욱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변화라 여겨진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의 개소를 통해 양방향으로부터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이주민들과 우리 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마블 알엄 | 프리포트 대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어, 이 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업들을 잘 하시리라고 기대 됩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국에는 이주민 관련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은 주로 사업의 대상자로만 참여하기만 하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주민들이 언어, 문화, 기획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함께 진행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인 기획자 분들이 결국 주요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이주민들은 이벤트의 얼굴 마담 이상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가 기존의 다른 센터에서 진행하던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보다 한국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주민의 인권도 결국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인식하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 곳 센터를 방문할 이주민들이 여기서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하고 도움만 필요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분명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 문제, 편견,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주민을 불쌍하고 도와준다는 시선으로는 이 현실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시선과는 다른 시선과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따라가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더 자신의 인권 문제에 관심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노력하는 활동들이 이 곳 센터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한가지 더 붙이지자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말은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구분을 짓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같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적을 강조한 ‘외국인’이란 말보다는 ‘이동’을 이야기하는 ‘이주민’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문 6



소라미 | 공감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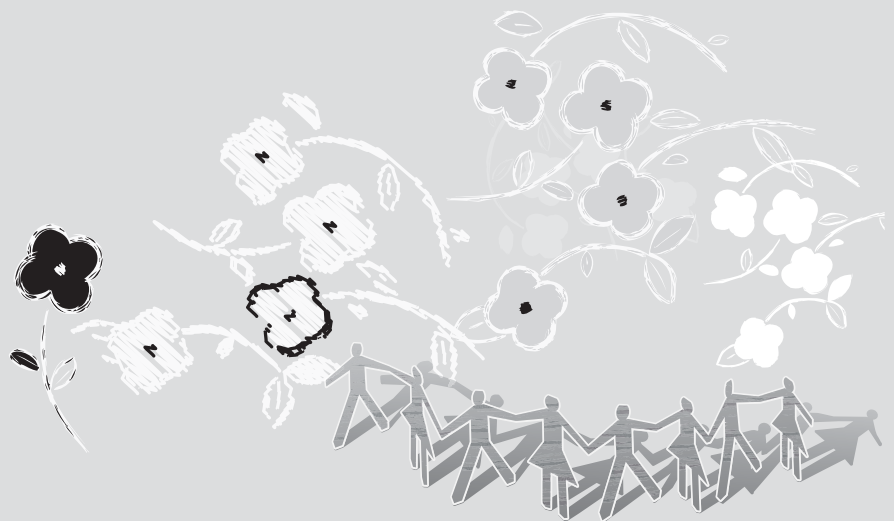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이주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소개

● 오경석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주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소개

오경석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1 설립 배경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전국 141만명 중 30%, 42만5천명)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 규모는 점증하는 추세로 경기도의 27개 시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가 2012년 8월 현재 무려 14곳에 달합니다. 2012년 11월 창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가하는 지자체 23곳의 절반 이상(14개)이 경기도에 소재할 정도로 경기도 지자체들의 다문화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의지와 의욕은 타 지자체를 압도합니다.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 답게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도 경기도는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2009년 전국에서 최초로 안산시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지 않는 외국인주민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2011년 경기도가 최초로 외국인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안산, 남양주, 수원, 시흥, 화성, 김포 등 도내 6곳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역시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기도 지역만의 독자적이며 선구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의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지원 제도와 인프라에 있어서 경기도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의거해 설립되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시책 개발 전담 기관으로서, 그 간 외국인 인권 분야에서 경기도가 만들어낸 성과들을 계승 발전시켜,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시민 사회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가 외국인 인권 정책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진일보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업목표와 운영방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입각해,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정책 및 이주민 인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제안함으로써, 다양성과 평등성이 조화되는 이주민 관련 제도 및 생활 세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연구와 정책 개발, 정책 시행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매개하는 현장친화적인 전문 연구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세 분야를 분리해서 수행하는 기존의 기관들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에서 외국인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장려하고, 외국인 인권 실현의 제도적, 문화적, 지역적 토대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 연구기관이자 정책자문기관의 위상을 갖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사회적 소수자 통합 서비스 기관인 안산제일복지재단과 이주민 전담 서비스 기관인 남양주 살림의 집의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외국인 인권 분야의 수행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경기도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접근성, 업무 범위와 효율성,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등의 분야에서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을 목표로 공공부문, 시민사회, 이주민지원단체, 수행적인 연구자 집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조직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운영됩니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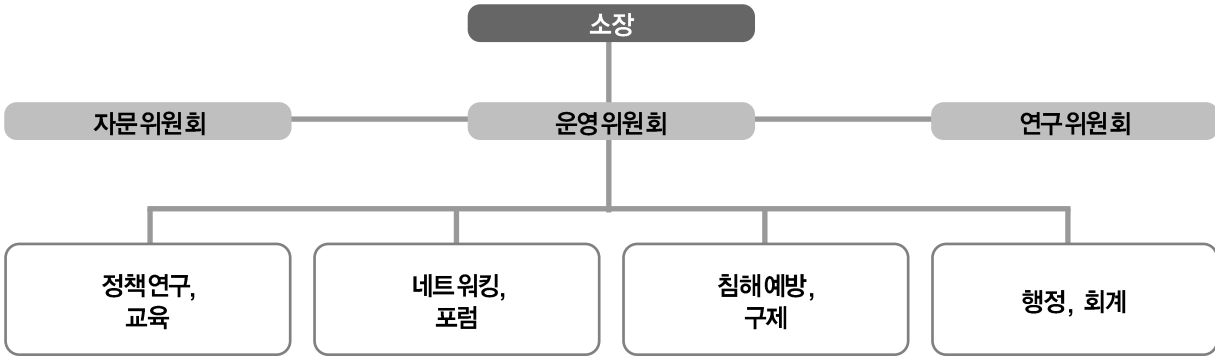
<표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운영 방침

지향 가치	내용
정치적 중립성(nonpartisanship)	정치적 이념의 차이보다 외국인 인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시함.
독립성과 자율성	공공 부문의 투명한 관리 시스템과 민간 기구의 자원적인 업무 시스템의 균형을 기반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외국인 인권'이 주업무인 기관답게 가능한 한 최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견지함.
민주적인 협치(governance)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참여자의 다양성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최대로 추구함.
자원, 정보, 역량의 네트워킹	최소의 인력과 자원으로 최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국인 인권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 노동, 의료, 일상생활, 정보, 조사와 구제, 연구, 교육)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함.
당사자주의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의 핵심 과제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의 인정과 존중에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인권 침해 조사와 구제에 있어서 외국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
수행적 전문성의 개발과 축적	이론과 현장의 접점인 '정책 공간'에서 활동하는 '준연구기관'의 위상을 갖는 인권 지원 기구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종사자의 수행적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함.

3 함께 하는 사람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의 조직은 1소장, 3위원회, 4팀으로 구성됩니다. (표1)

<표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직



다섯 명의 상근 직원의 프로 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 역 량과 현장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표3)

<표3> 상근 직원 프로 필

이름, 직위	전담 분야	약력
오경석 소장	시책 개발, 연구 조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학박사, 국경없는마을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외국인인권전문위원, 안산시외국인인권증진위원, 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실장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1)」, 「다문화 인권 기본 교재-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12)」, 「어업이주노동자인권상황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2)」, 「안산시외국인주민인권증진기본계획안산시, 2010)」 등
이경숙 팀장	국내외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석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 연대 및 프로젝트 개발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인하대, 2008)」, 「2008 인권 선언(사람생각, 2009)」 등
홍규호 팀장	연구 조사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평화학 석사(일본),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팀장,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Migrants in Korea : From Victims to the Agents of Changes(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2011)」 등



이름, 직위	전담 분야	약력
김상훈 국장	침해 조사와 상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소장 외국인 인권 상담(노동, 여성, 가족) 및 구제 실무 경력 11년 외국인 인권 교육, 문화 활동 지원 의료 및 자조 네트워크 구성, 이주여성 쉼터(drop-in센터) 운영
현은희 국장	행정, 회계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시스템 구축 및 회계 전문가,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주민 인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활동가, 학자들로 구성된 세 위원회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사업 방향과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네트워킹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표4)(표5)(표6)

<표4> 자문위원회

이름	소속
김남국	고려대, 교수
김형진	문화산업연구소, 변호사
박영철	성결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오현철	제일교회, 목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정호	남양주 샬롬의 집, 관장
전경옥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정정훈	평민, 변호사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표5> 운영위원회

이름	소속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장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이라	경기도의회 의원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이영	남양주샬롬의 집, 사무국장
정현정	UNHCR, 실장
조임근	안산제일복지재단, 본부장

<표6> 연구위원회

이름	소속과 연구영역
구본규	오클랜드 대학, 오세아니아
김희정	메어리워싱턴 대학, 미국
남경우	HOFE 선교회, 동남아시아
선원석	오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일본
여광균	컬럼비아대학, 미국
이선옥	UBC, 캐나다
이정민	샌프란시스코대, 동남아
이정은	성공회대, 재외동포
정진현	막스플랑크연구소, 유럽
진성원	플로리다대, 동아프리카

4 주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이 공공 부문과 시민 사회 및 생활 세계 영역에서 자유롭고 존엄한 인권 주체로서의 위상을 보장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외국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 인권 향상과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시책 발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내외국인 인권 교육,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네트워킹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모든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으로 수행됩니다.

첫째, 외국인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의 외국인 정책이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분리주의를 바탕으로, 관주도의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면, 앞으로의 외국인 정책의 근간은 관-민-지역사회-당사자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 정책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해나갈 수 있는 논거의 개발과 실제적인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외국인 인권과 문화다양성 분야 위상은 최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이주민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인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 전환의 키워드가 ‘지역’ 이고 ‘인권’ 입니다. 국제 수준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며, 다문화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의 키워드가 다름 아닌 인권입니다.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한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도가 국제 수준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 국내외를 선도하는 외국인인권친화적인 지자체의 위상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박한 인권 의제라는 점에서 ‘현실타당’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지 않거나 타 기관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기획, 발굴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의 사업 목표는 ‘초기 기반 구축 및 아젠다 설정’이며, 2차년도의 사업 목표는 ‘센터 위상 공고화 및 아젠다 활성화’ 입니다. 1차년도에는 정책 개발, 연구 조사, 교육, 침해 구제, 네트워킹 분야에서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만의 아젠다를 개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센터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개발한 각 분야별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센터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사업 영역의 확장과 침해 예방 및 구제 방법론의 정교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표7)

<표 7> 단계 및 분야별 사업 아젠다

단계별 사업목표	1단계	2단계
	초기기반구축 및 아젠다 설정	센터 위상 공고화 및 아젠다 활성화
정책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실무 매뉴얼 제작
실태조사	국제 수준에 조응하는 사회통합지향의 외국인 정책 개발의 준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이주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외국인 정책의 포괄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한 실태 조사(무국적자 가족 실태조사)
교육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의 외국인 인권의식 및 규범의 주류화	외국인 인권 교육의 제도화 기반 구축 (교재 발간)
권리구제	인권침해 범주화,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 네트워크 구축	이주민 인권 수첩 제작 보급, 외국인 인권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킹	공공부문, 시민사회, 지역사회, 국제사회	당사자 중심의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1 외국인 인권 시책 개발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하고, 합법적인 결혼이민자라는 제한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의 적응과 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그 결과 정책의 중복과 서비스의 공백, 제도화의 확장과 당사자 역량의 약화로 압축되는 '목표의 전도'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의 외국인 인권 시책 개발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인권 정책의 포괄성, 민주성, 일관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는 2011년 6월 현재 380,606명으로 한국 전체 외국인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03,736명(53.5%), 결혼이민자가 37,541명(9.9%),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37,519명(9.6%)에 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 규모는 점증하는 추세로 경기도의 27개 시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가 2011년 현재 무려 14개에 달합니다.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하는 전체 지자체 23곳의 절반 이상(14개)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 답게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도 경기도는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인권증진조례의 제정(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운영(안산, 남양주, 수원, 시흥, 화성, 김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는 한국 외국인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본'이자 '시금석'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경기도는 "조화롭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구현을 정책 목표로, 189억여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리주의와 동화주의를 넘어선 인권친화적인 다문화주의 외국인 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한국 외국인 정책의 선도적인 지자체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설정한 몇 가지 향후 정책 과제 가운데 "외국인 주민 차별 해소 및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천" 분야가 보다 강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책무의 대상 집단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민'으로 제한되는 한 외국인 주민은 결코 기본권의 주체로 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인간'



으로 확장하는 일은 다문화 사회가 요청하는 사회통합적인 외국인 정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 친화적인 행정 패러다임의 구축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구화와 다문화의 시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1, 2차 년도 시책 개발의 아젠다를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차년도 시책 개발 사업은 도내 지자체의 외국인 행정이 국민 중심의 관행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를 위해 도내 각급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 및 담론을 분석하고 공공 부문 인터페이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차년도의 사업 목표는 인간 중심의 외국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점진적이며 실질적으로 요청되는 업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입니다. ‘정책 대상 집단의 재개념화’, ‘공공 부문 인터페이스 종사자 선발 기준 및 업무 규범’, ‘인권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방안’, ‘인권 친화적인 업무 평가 시스템(인권 행정영향평가)’, ‘지역 특화적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외국인 인권 친화 지자체 및 인권 친화 기관 인증제’ 등이 2차년도 시책 개발 사업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2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불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은 모든 개인과 집단이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인권 정책의 수혜자일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의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는 주로 합법적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라는 제한된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데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정책의 과잉과 서비스의 누락이라는 모순된 효과를 낳는 것과 비슷하게 인권 담론에서 조차 배제되고 소외되는 외국인 집단, 곧 ‘작은 권리’를 갖는 것을 넘어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이주민”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오경석 2011).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현행 외국인 지원 정책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공백 지대에 존재하며 동시에 기존의 인권 실태 조사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 실태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 가족 조사와 무국적자 가족 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현행 외국인 인권 지원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인권 담론의 지평을 외국인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매개 고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들 조사는 외국인 인권 지원 정책 대상의 포괄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정책의 안정성을 공고히하며 새로운 정책 영역을 발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1차년도에는 ‘이주노동자(다문화 가족 범주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2차년도에는 ‘이주민 소수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무국적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분야의 본격적인 실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부부와 자녀 혹은 재혼한 이주노동자 부부와 (중도입국한)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이주노동자 가족은 이미 상당히 일반적인 외국인 가족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분리주의 정책의 시급한 개선은 필요합니다. 본 조사는 이러한 정책 개선을 위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그 규모면에서는 좀 더 소수인 무국적자 가족의 인권 실태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국적자 가족 조사는 2차 년도부터 매해년도 수행하게 될 이주민 소수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의 일환입니다. 이주민 소수자에는 무국적자와 난민(및 그 가족) 이외에도, 예술홍행공연비자(E-6) 소지 이주여성(성매매 이주여성), 이주여성 노동자 및 해체된 다문화 가정, 농어축산업 및 건설업 등 고립된 사업장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계적으로 1천 2백여만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는 국제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인권 취약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무국적자 가족, 그 가운데서도 무국적 아동은 주목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가족 및 인도적 체류자 가족의 자녀들 대부분은 실질적인 무국적자들입니다. 2010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무국적자는 183명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및 비호신청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 100여명은 모두 무국적자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1962년에 유보 조항 없이 「무국적자협약」에 가입한 바 있으나, 무국적자의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등록 및 인정 절차, 관련 부서 자체가 부재하며, 지원 단체 역시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본 센터는 2차년도에 무국적 이동을 중심으로 무국적자의 실태 및 인권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1차년도 조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동시에 한국이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인권 교육

외국인 인권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정책의 효율성을 넘어 인권 의식 및 문화의 생활화(주류화)에 있다는 점에서 인권 교육은 외국인 인권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교육의 주요한 대상은 외국인 업무와 관련된 공공 부문, 사업장 및 시민 사회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공공 부문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의 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을 통해 인권 교육 및 훈련 대상 공무원 범주에 “정부 부처나 국 혹은 과 등에서의 관료 및 정책입안자, 지방정부 및 지자체뿐 아니라 재정, 경제부처 등의 피고용인, 교사, 공공의료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유엔은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내부규칙 등에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인권 과정이나 인권 과목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인권 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유엔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권고에 근거해, 외국인 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권 교육은 대상 범주를 인터페이스 종사자, 외국인 고용 사업주, 일반 시민, 아동 및 청소년 그룹으로 특화시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의 교안을 중심으로 2차년도에는 인권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센터는 인터페이스 종사자 외국인 인권 교육 사업에서 현재 「지자체 다문화 담당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다문화 인권 교육 협의체 구성」, 「다문화 인권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등을 추진 중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4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

실제적인 인권 침해 예방, 침해 조사 및 권리 구제는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조사나 사법권이 부재하다는 점과 사무국이 시책 개발, 조사,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소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소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침해 조사의 용이성,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의 구속성을 약화시키고, 후자로 인해 기존의 지원 센터들이 사용하는 개별 상담 및 케이스별 문제 해결 지원의 방식도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본 센터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예방의 차원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을 발굴한 후, 기본적인 인권 침해 유형과 그 대응책을 소개하는 '이주민 인권 수첩'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침해의 유형화와 관련 본 센터는, 중요한 인권침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기 쉬운 유형들을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국제 사회가 강조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론화가 미흡한 '인신매매성 강제 근로'의 다양한 형태들이 제시될 것이며,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인권 침해의 사례들의 유형화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구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도내 출입국 관리소 및 외국인 보호소, 고용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외사계 등 공공 부문 인권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인권 침해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서 당사자 및 시민사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학회 회원들의 참여의 조직화 및 활성화, 경기도 내 상담 센터들 간의 상담 네트워크 및 공동사례관리,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권 침해 사례의 실시간 공개, 침해조사권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한 진정 및 준사법적인 권고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제 구축 방안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동의 구현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nonpartisanship)과 민주적인 협치(governance)를 운영 지침으로 채택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 및 시민사회, 외국인 당사자,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경기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의 독자적인 정체성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센터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국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서 그 간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과 맺어온 ‘우호 관계(rapport)’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권 분야별로 특화된 국내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본 센터가 구축할 협력 체제는 크게, 법무부, 노동부, 교육청 등 공공 부문과의 협력 체제, 시민사회 외국인 지원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당사자 자조 모임을 포함하는 지역 사회 인권 자원 네트워크, 국제사회네트워크 등으로 대별됩니다.

공공 부문과의 협력 체제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기반으로 관련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항상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지원단체 네트워크 구축은 경기도내 6곳의 ‘외국인 주민 복지 센터’들의 정례적인 모임과, 기타의 민간 지원단체들의 정례화된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인권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과 배치를 위해서는 법률, 의료, 상담, 생활, 노무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은 당사자 그룹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국제 사회 네트워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이주기구(IOM), 선주민 문제를 다루는 국제활동가그룹(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등 이주 인권 관련 국제 기구들과 지속적인 공조와 공동 사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처음하는’ 국제 이주 인권 국제 포럼”이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처음 하는 국제 이주 인권 포럼’은 한국의 시민 사회에는 낯설고, 국내의 주류 외국인 인권 담론에서는 주변화되어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인권 의제들(이를테면 ‘소수 민족’이나 ‘선주민’의 인권)을 소개함으로써 다문화 시대 인권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공동의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5 기대와 책무

처음 하는 일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주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사업의 방향과 방식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데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는 설레이지만, 그 길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은 적지 않은 부담과 책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문과 지지, 격려와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좌표는 ‘평등, 다양성, 관용, 연대, 평화’ 라는 다섯 가지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 센터의 가치이자, 우리 종사원 다섯 명 개개인의 삶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평등과 다양성, 관용과 연대, 평화라는 좌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이라는 한국 최초의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를 ‘즐거운 책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눈여겨 보아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충고와 질타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2. 다문화인권 기본 교재-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 오경석. 2011. ‘다문화주의’에서 배제된 이주민들의 인권: 연근해 선원, 난민과 무국적, 미등록이주민. 이주민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의 의의와 전망 학술 대회 자료집.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한국다문화가족학회.

함께 하는 사람들

● 자문위원

- 김남국 : 고려대 교수
- 김형진 : 문화산업연구소, 변호사
- 박영철 : 성결대 교수
- 신은주 : 평택대 교수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오현철 : 제일교회 목사
-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이정호 : 남양주 살림의집 관장
- 전경옥 :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 정정훈 : 평민, 변호사
- 한윤수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운영위원

- 김현미 : 연세대 교수
- 류지호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장
- 박경태 : 성공회대 교수
- 위은진 :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 이란주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이영 : 남양주 살림의집 사무국장
- 이재준 : 경기도의원
- 정현정 : UNHCR 실장
- 조임근 : 안산제일복지재단 본부장

● 연구위원

- 구본규 : 오클랜드 대학(이주, 초국주의)
- 김희정 : 메어리워싱턴 대학(이주, 시민권)
- 남경우 : HOPE 선교회(동남아시아)
- 선원석 : 오사카 경제법과대학(고용노동, 이민)
- 여광균 : 컬럼비아대학(이주, 지구화)
- 이선옥 : UBC(이주, 에쓰닉 시티)
- 이정민 : 샌프란시스코대(다문화교육, 다문화아동 정체성)
- 이정은 : 성공회대(인권문화, 마이너리티)
- 정진현 : 막스플랑크연구소(난민, 인권)
- 진성원 : 플로리다대 (재해인류학, 정치생태)



직원소개

■ 소장 : 오경석

국경없는마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에서 일했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르며 동시에 평등하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별, 꽃, 샘, 김, 네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쁩니다. 빛깔과 향기가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연대할 수 있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국장 : 김상훈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살롬(평화)의 집”을 1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나눈 삶은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방인을 존경하라’, 그 곳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나그네들 사이에는 경쟁과 두려움 대신, 아름다운 관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의 따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 : 현은희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섬기는 안산제일복지재단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며 존엄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절대적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첫사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화의 지경을 넓혀 보려 합니다. 첫사랑의 행복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팀장 : 홍규호

“차이는 인정한다, 그러나 차별에는 도전한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글로벌 시민이 되고자 노력중입니다. 제도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신바람 나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일본에서 이주와 다문화를 공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에서 일하며 외국인 인권관련 업무를 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을 쌓았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권의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

■ 팀장 : 이경숙

낯섦이 주는 어색함보다는 새로움이 주는 설렘을 좋아합니다. 아직은 낯설 때 경직되기가 일수입니다만,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향유되는, 맛있는 세상을 희구합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에서 소중한 분들로부터 같음과 다름으로 어우러져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열어줄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배움을 기대합니다. 저에게 그 열쇠가 되어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비전과 과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4-1(원곡동 784-13)

TEL. 031-492-9347, 9348

www.gmhr.or.kr